

	<h2 style="margin: 0;">공간관리규정</h2>	규정번호	3-1-31
		제정일자	2024.01.01.
		개정일자	2025.12.01.
		개정차수	1차
		소관부서	전략기획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이하“대학”이라 한다)에 공간 배정·조정 기준과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간관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이라 함은 대학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점유하여 활동하는 장소를 말하며, 이는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간을 말한다.
2. ‘공간용도’라 함은 공간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용도 목적 및 형태별로 분류한 것을 말한다.
3. ‘공간배정’이라 함은 교육, 연구, 학생활동, 행정업무, 사업목적 등에 필요한 공간 사용을 승인·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간변경’이라 함은 공간의 명칭·구조·용도 및 면적 등 기재된 공간의 내용과 모양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간회수’라 함은 기존 공간의 배정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주체’라 함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총장으로부터 점유 및 사용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부서장 및 학과장 등을 말하며, 관리책임자로 지정된다.
7. ‘사용주체’라 함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부서, 학과, 학생자치기구 등)를 말한다.

제3조(공간 관리 원칙) ① 대학 내 모든 공간의 신설, 배정, 사용, 변경, 조정, 회수, 처분, 용도 지정 권한은 총장에게 있으며, 모든공간은 주관부서장의 관리하에 공동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총장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행정부서장 및 학과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관리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③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공간 배정목적이 소멸되는 등 퇴거사유가 발생한 때에 사용자 및 관리주체는 자발적으로 공간을 반납하여야 하고, 미반납 시 회수조치를 하며,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④ 관리주체는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간을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건물구조를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⑤ 공간관리 주체는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간사용에 지장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간을 개방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25.12.01.>

제4조(주관부서) ① 주관부서는 전략기획처로 하며,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배치, 활용, 조정 등 계획 수립
 2. 공간의 배정, 구조 및 용도변경 등
 3. 그 밖에 공간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
- ② 지원부서는 행정지원처로 하며, 공간 관련 지원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의 유지보수, 공사, 대여 등 공간의 사용에 따른 관리 업무
 2. 공간배치 도면관리
 3. 그 밖에 공간 관련 지원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공간 배정, 변경, 조정, 회수, 용도 지정 등 공간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공간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다.

제6조(공간의 반납)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 없이 사용 공간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주체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박탈된 경우
2. 사용목적이 달성 또는 소멸되어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용기간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경우
4. 기타 총장이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공간 반납을 지시하는 경우

② 관리주체는 교원이 퇴직할 경우 그들이 사용하던 공간을 즉시 총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연구나 용역 등 특별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배정받은 공간에 대하여 사용목적이 달성 또는 소멸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결과 보고나 장비 이전 등의 사유로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기간 및 사유를 명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공간 데이터의 관리) ① 전략기획처는 대학 공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지원처는 본 대학교 공간과 일치하는 공간배치 도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기되지 않은 공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간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